

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「화장품법」 개정, 체계적인 화장품 정책 지원으로 K-뷰티 경쟁력 강화
- 「의료기기법」 개정, 온라인 감시 강화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
- 「수입식품법」 개정, 해외제조업소 제재 강화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「화장품법」, 「의료기기법」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「화장품법」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관리,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관련 사항의 논의를 위한 화장품관리 협의회를 신설·운영하게 된다.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K-뷰티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

「의료기기법」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·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확인시 해당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.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개정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*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. 이에 따라 등록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해외제조업소 등록제: 수입식품의 수입 전(前)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·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약사법 개정*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
* 약사법 개정사항: 약사가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(DUR) 확인 의무화 및 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무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

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·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·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관 물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·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	오영진 (043-719-1501)
		담당자	주무관	문정석 (043-719-1533)
<협조>	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동희 (043-719-2170)
		담당자	사무관	남궁종환 (043-719-2168)
<협조>	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	책임자	과 장	문은희 (043-719-2808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숙 (043-719-2802)
<협조>	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지연 (043-719-3401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수 (043-719-3412)
<협조>	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성홍모 (043-719-3752)
		담당자	사무관	양한주 (043-719-3783)

